##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85

발의연월일: 2024. 8. 6.

발 의 자: 박은정 · 이해민 · 김준형

차규근・서왕진・조 국

강경숙 · 김재원 · 정춘생

황운하 · 김선민 · 신장식

의원(12인)

####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절차와 양정이 정해지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통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징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어 왔고,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 공무 원과 같은 절차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 지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절차 및 구성·권한·심의절차, 그 밖에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제2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호 중 "탄핵결정에"를 "탄핵결정이나 징계처분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정원, 보수 및 징계"를 "정원 및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계의 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그 밖에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중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자 적격심사에"를 "형의 선고, 징계처분에"로,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을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결격사유) (생 략)	제33조(결격사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탄핵결정에</u> 의하여 파면된	3. <u>탄핵결정이나 징계처분에</u> -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6조(정원·보수 및 징계) ①	제36조(정원・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u>정원, 보수 및 징계</u> 에 관하	<u>정원 및 보수</u>
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u>&lt;신 설&gt;</u>	② 징계의 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그 밖에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
	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u>으로 정한다.</u>
<u>②</u> · <u>③</u> (생 략)	$\underline{3} \cdot \underline{4}$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u>탄핵이</u>	제37조(신분보장) <u>형의 선</u>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 징계처분에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u>파면·해임·면직</u>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	<u>•정직•감봉•견책</u>
<u>사에</u> 의하지 아니하고는 <u>해임</u>	
<u>•면직•정직•감봉•견책</u> 또	

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